농업생명과학연구 윤리규정

제정 2007년 7월 23일
개정 2019년 4월 19일
개정 2019년 12월 27일
개정 2020년 2월 1일
개정 2021년 3월 1일
개정 2022년 5월 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에서 발간되는 '농업생명과학연구'(학술지)의 심사 및 출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과 처리 과정을 통하여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술지 투고자 및 학술지 발간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와 그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심사하거나 결과를 보고하는 등의 과정에서 행해진 위조·변조·표절·중복투고 또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출판자료의 재출판·연구물의 투고 및 게재 등을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중복투고"는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게재예정이거나 심사중인 연구물을 포함한 본인의 연구물을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투고하거나 게재하는 행위
5.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7.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8. "저자됨(authorship)"은 1) 연구 설계,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2)논문에서 중요한 내용을 작성하거나 수정하였으며, 3)논문 투고 전 최종 검토 및 승인을 한 경우, 4)논문의 완성도 및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논문을 검토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2.1.)
9. "기여자"는 연구를 수행하면서)연구 데이터 제공, 2)연구 데이터 수집, 3)연구그룹에서 기

술을 지도, 4)실험실 공간 또는 연구 장비 제공, 5)연구비를 받는데 기여, 6) 연구팀이나 그룹을 총 지휘한 연구자를 말하며, 이들은 개인의 허가를 받아 감사의 (Acknowledgements)에 언급한다. (신설 2020.2.1.)

제4조(젠더 혁신)

1. 세포실험 , 동물실험 또는 임상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 논문의 경우에는 성별 기술에서 성 (sex)과 젠더 (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하여야 하고 , 연구 대상에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대상으로 연구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또한 , 단일 성으로만 연구하는 경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5.1.)

제5조(특수관계인)

1. 미성년자 (만 19 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 (배우자 , 자녀 및 4 촌 이내의 혈족) (이하 ‘특수관계인 ’ 이라 함)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작성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 (신설 2022.5.1.)

2.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논문은 논문투고시 ’특수관계인과 논문 공저 시 사전공개 양식 ’을 제출한다. (신설 2022.5.1.)

제6조(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노력)

1. 연구윤리의 준수, 규정위반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2. 저자는 투고 시 논문 유사도 및 표절 검사를 실시하도록 요구받으며, 편집위원회에서는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재차 이를 확인한다.
3. 연구자와 편집위원에게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등 연구윤리 준수 관련 내용을 교육한다.
4. 저자는 논문 투고 시에 저자의 소속, 직위를 명기하며,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 전후 이를 확인한다. (신설 2019.12.27.) (개정 2020.2.1.)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조사 및 심의)

1.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과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윤리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 Institutional Review Board)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가능성이 인지된 경우 또는 개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요청 받은 경우에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를 거쳐 연구진실성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판정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제8조(윤리규정 위반의 징계)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로 판단될 때 이에 상응하는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통지한다. 연구 부정행위로 적발된 논문은 취소하고, 해당논문의 모든 연구자는 3년간 본 학술지

에 투고할 수 없으며,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논문의 게재불가 또는 향후 논문 제출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조치를 공문, 서면 또는 E-mail로 통지할 수 있다.
3. 제보자가 고의 또는 사실을 간과하여 진실에 어긋나는 제보를 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연구윤리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피조사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준용)

본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은 연구 부정행위 논문이 발생한 경우 사후 조치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개정 2019년 4월 19일)

부 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개정 2019년 12월 27일)

부 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개정 2020년 2월 1일)

부 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개정 2021년 3월 1일)

부 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개정 2022년 5월 1일)